#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63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이헌승·유용원·서지영

주호영 • 박덕흠 • 김상훈

박준태 · 김선교 · 유한홍

윤상현 • 박성훈 • 송석준

조승환 의원(13인)

## 제안이유

공모펀드는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손쉽게 소액・분산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나, 최근 ETF, 사모 펀드에 비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효용 대비 높은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 비 용, 투자자의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하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수익자총회 운영 전자화,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

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 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 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펀드 판매보수 직접수취 · 성과연동 허용(안 제76조제4항)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가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하고,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함.

- 나.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안 제82조, 제186조제1항, 제230조제6항).
  만기시까지 환매가 금지된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기간환급형 펀드)를 도입함.
-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수익자총회 도입(안 제189조제7항, 제1 90조의2 신설 등)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펀드 수익자총회를 수익자 전부 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 방식 또는 수익 자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전자수익자총회 방식으로 전자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펀드관계회사 규율 신설(안 제254조제2항,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 신설, 제255조, 제258조제2항,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 까지 신설, 제260조, 제263조제2항, 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 신설, 제265조 등)

펀드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는 펀드관계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제정, 준법 감시인 선임,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규율함.

마.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안 제27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해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 우회소지를 차단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합리화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01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항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를 "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 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8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18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189조제7항제1호 중 "성명"을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로 한 다.

제1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0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 「상법」 제364조제2항 및 제364조의2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 다. 이 경우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정관"은 "신탁계약"으로, "주주"는 "수익자"로, "병행전자주주총회"는 "병행수익자총회"로, "완전전자주주총회"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로 본다.

제201조제3항 전단 중 "제9항까지"를 "제9항까지, 제19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은 "정관"으로"를 "은 각각 "정관"으로"로, 같은 항 후단 중 ""좌수""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주주총회"로, "완전전자 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주주총회"로, "좌수""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

제210조제3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을 받"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

제215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을 받"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

제217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

제220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

제226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

제2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집합투자업자등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시기,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제249조의20제4항 중 "제14조제1항"를 "제31조제1항"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6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4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 제254조의3(내부통제기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54조의4(준법감시인) ① 일반사무관리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

- 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2.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54조제1항의 업무
-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55조 중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2조, 제54조, 제60조, 제63조(기준가 격 산정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

제258조제2항제8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8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 제258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8조의4(준법감시인)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2.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58조제1항의 업 무

-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8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행위
  - 2. 집합투자기구평가 과정에서 다른 집합투자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3. 집합투자기구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4. 집합투자기구평가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또는 그 계 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

위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59조를 삭제한다.

제260조 중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

제263조제2항제3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것(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3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 제26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3조의4(준법감시인) ① 채권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채권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2.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63조제1항의 업무
  -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채권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3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평가하는 행위
  - 2. 채권평가 과정에서 다른 채권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3. 채권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 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4. 채권평가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263조의6(의결권의 제한) ① 제26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채권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26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채권평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4조를 삭제한다.

제265조 중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판매"를 "판매(간접적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록"을 "등록(제2항제1호의 경우 제1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14제2항 전단 중 "제259조제2항은"을 "제258조의3제2항은"으로 한다.

제445조제12호 중 "제289조"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의4부터 제32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4. 제2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32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32의6. 제2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32의7. 제2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32의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32의9. 제26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제446조에 제52호의3부터 제5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2의3. 제258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한 자
  - 52의4. 제258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한 자
  - 52의5. 제258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
  - 52의6. 제258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 52의7. 제263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평가한 자
- 52의8. 제263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채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한 자
- 52의9. 제26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
- 52의10. 제263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채권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제449조제1항에 제43호의2부터 제43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9조"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9호 중 "제335조의14"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60조, 제265조, 제35조의14"로 한다.
  - 43의2. 제254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43의3. 제25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3의4. 제25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3의5. 제2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
  - 43의6. 제2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43의7. 제2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을 정하지 아니한 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3의8. 제26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43의9. 제26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3의10. 제26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별표 3 제2호 중 "제184조제6항"을 "제184조제6항 또는 제2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54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3의3. 제254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3의4. 제254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3의5. 제254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의6. 제254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 3의7. 제254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 이익을 주는 경우
- 5의2. 제255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63조(기준가격 산정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및 제4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 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58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258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3의3. 제258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3의4. 제258조의3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과 관련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의5. 제258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 3의6. 제258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3의7. 제25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260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
  - 다), 제63조(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
  - 다) 및 제4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제264조제2항"을 "제263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63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 니한 경우
  - 3의2. 제263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3의3. 제263조의2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3의4. 제263조의3을 위반하여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의5. 제263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3의6. 제263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 이익을 주는 경우

3의7. 제263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의2.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 다),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및 제4 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4조,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 제255조, 제258조,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제259조, 제260조, 제263조, 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 제264조, 제265조, 제335조의14, 제445조, 제446조, 제449조, 별표 3 제2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까지, 별표 4 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까지, 별표 5 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같음)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 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 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 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 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 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 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 다만, 투 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

## ⑤ · ⑥ (생 략)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 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 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취득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 등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

<u> 동하여 미리 성하여진 산성방</u>
식에 따른 판매보수를 받을 수
<u>있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
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
득 제한 등) ①

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 ② (생략)
-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 ⑥ (생 략)
  -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 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 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 2. (생략) ⑧・⑨ (생략) <u><신</u>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 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 ① ~ ⑥ (현행과 같음)

- 1. -----성명, 주 소 및 전자우편 주소
- 2. (현행과 같음)
- ⑧・⑨ (현행과 같음)

제190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 「상법」 제364조 제2항 및 제364조의2는 전자통 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회 사"는 "집합투자업자"로, "정 관"은 "신탁계약"으로, "주주" 는 "수익자"로, "병행전자주주 총회"는 "병행수익자총회"로, "완전전자주주총회"는 "완전전 자수익자총회"로 본다.

제201조(주주총회) ①  $\cdot$  ② (생 $\mid$  제201조(주주총회) ①  $\cdot$  ② (현행

략)

③ 제190조제1항·제3항 및 제 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 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 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 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 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 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 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④ (생략)

제210조(사원총회) ①·② (생략)

③ 제190조제1항·제3항·제4 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과 같음)
③
<u>제9항까지, 제190조의2</u> -
<u>&amp;</u>
<u>각각 "정관"으로</u>
<u>"병행수</u>
익자총회"는 "병행주주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
전자주주총회"로, "좌수"
<u>제190조제8항</u>
④ (현행과 같음)
데210조(사원총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제10항까지, 제19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통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제215조(사원총회) ① ~ ③ (생략)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u>제10항까지</u>의 규정은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 관

0조의2
"투자신탁"은 "투자유
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
한 집합투자업자"
"병행수익자총회"는 "병
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
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
로, "수익자명부"
제190조제8항
215조(사원총회)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제10항까지, 제190조의2

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 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 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 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 는 각각 "사원통회"로, "수익자 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 는 각각 "수"로 보고, <u>같은 조</u>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 ③ 저 (생 략)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 6항부터 <u>제10항까지</u>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
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
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
투자업자"
"병행수익자총회"는 "병
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
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
로, "수익자명부"
<u>제190조제8항</u>
세217조의5(사원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제10항까지, 제190조의2</u>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 업자"는 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 으로, "총좌수"는 각각 "차원"으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 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생 략)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 ③ 저 (생 략)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u>제10항까지</u>의 규정은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u>"투자신탁"은 "투자유한</u>
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
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
정한 집합투자업자"
<u>"병행수익</u>
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
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
제190
조제8항
<u>.</u>
⑤ (현행과 같음)
네220조(조합원총회) ① ~ ③
세220조(조합원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 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 저 ③ (생 략)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u>제10항까지</u>의 규정은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
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
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
<u> 자명부"</u>
<u>제190조제8항</u>
세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u>제10항까지, 제190조의2</u>

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
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
각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기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기 영업자"로,
"지분증권"으로, "추익증권"은 각
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홍수"로, "수익자"는 각
각 "익명조합원"으로, "수익자
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
회"로, "수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총
회"로, "수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총
회"로, "후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총

-----"투자신탁"은 "투자익 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 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 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 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 원총회"로, "수익자명부"----조제8항---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집합투자업자등은 환매금지

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 ⑤ (생 략) <신 설>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 7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 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 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지 (생 략)

시기, 규모 및 절차	등에 관	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도의	청
약을 권유하고 그	집합투자	증
권을 매수할 수 있다.	<u>.</u>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	합
투자기구에 대한 특	례) ①	$\sim$
③ (현행과 같음)		
4		
	제31	<u>조</u>
제1항		
제254조(일반사무관리호	(사)	1
·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5. (생략)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 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2)				 
1.	~ 5.	(현행고	나 같음)	
6				 
ス	]			
_	<u>`</u>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54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254조의3(내부통제기준) 일반사 무관리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 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 <u>항</u>
-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신 <u>설></u>

사항

3. 그 밖에 일반사무관리내부통 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4조의4(준법감시인) ① 일반 사무관리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사무관 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일반사무관리내부통 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 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 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 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 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 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고 유재산의 운용업무

제255조(준용규정) <u>제42조, 제54</u> 제255조(준용규정) <u>제33조(제2항</u> 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 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 ②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7. (생 략)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 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 2.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영 위하고 있는 제254조제1항의 업무
-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 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 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 감시인에게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 한다), 제42조, 제54조, 제60조, 제63조(기준가격 산정을 담당 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 64조 및 제418조----
- - ① (현행과 같음)
- 1. ~ 7. (현행과 같음)
- 8. -----

<u>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u>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것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58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258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평 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 <u>항</u>
-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사항
-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평가내 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신 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 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 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58조의4(준법감시인) ① 집합 투자기구평가회사(자산규모, 매 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 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투 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 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 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 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 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 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2.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58조제1항의 업무
-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 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 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8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의

<u><신</u>설>

-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집 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행위
- 2. 집합투자기구평가 과정에서 다른 집합투자평가회사와 면 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3. 집합투자기구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의구의 집합투자의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등일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4. 집합투자기구평가와 관련하 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또 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 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 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 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 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 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60조(준용규정) <u>제54조, 제60</u> 제260조(준용규정) <u>제33조(제2항</u> <u>조 및 제64조</u>는 집합투자기구 <u>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u> 평가회사에 준용한다. 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u>로 정하는 행위</u> <삭 제>

제260조(준용규정) <u>제33조(제2항</u>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 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 (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담당 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 64조 및 제418조-----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현행 과 같음)

(2)	 	 	 

- 1. 2. (생략)
- 3.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u> 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u>신</u> 설>

<u><</u>신 설>

- 4. ~ 7. (생략)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 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한다)

③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3.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u>

<u>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u> <u>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u> <u>융기관</u>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 4. ~ 7. (현행과 같음)
- 8. -----------것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63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26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 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 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평가내부통제기 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사항
- 3. 그 밖에 채권평가내부통제기 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 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63조의4(준법감시인) ① 채권 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권평가내부 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 하고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 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u><신 설></u>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 서는 아니 된다.
- 해당 채권평가회사의 고유재
   산의 운용업무
- 2.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63조제1항의 업무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채권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3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u><신 설></u>

- <u>그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요</u> <u>구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평가</u> <u>하는 행위</u>
- 2. 채권평가 과정에서 다른 채 권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 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3. 채권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4. 채권평가와 관련하여 채권평 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 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 제263조의6(의결권의 제한) ① 제 26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로 정하는 행위

<신 설>

채권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한 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263조제2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채권평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 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 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 제265조(준용규정) 제33조(제2항 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 에 준용한다.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 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 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 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 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 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 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 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 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 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
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
세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
록 등) ①
<u></u> 판매(간접적 판매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 정·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여야 한다.

## ② (생 략)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 <신 설>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생 제략)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 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 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

이 장에서 같다)
<u>.</u>
② (현행과 같음)
③
<u>등록(제2항제</u>
1호의 경우 제1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외
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35조의14(준용규정)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258조의3제2항은

가회사"로 본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1. (생략)
- 12. 제63조제1항제1호(<u>제289조</u>,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 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 32의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445조(벌칙)
 1. ~ 11. (현행과 같음) 12 <u>제255조,</u> <u>제260조, 제265조, 제289조</u>
13. ~ 32의3. (현행과 같음) 32의4. 제258조제1항을 위반하
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         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32의6. 제262조제1항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32의7. 제263조제1항을 위반하

<u><신</u> 설>

<신 설>

33. ~ 48. (생략)

1. ~ 52의2.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 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3조제1항에 따 른 등록을 한 자 32의9. 제267조제1항에 따라 등 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 무를 영위한 자 33. ~ 48. (현행과 같음) 1. ~ 52의2. (현행과 같음) 52의3. 제258조의5제1호를 위반 하여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 당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한 자 52의4. 제258조의5제2호를 위반 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한 자 52의5. 제258조의5제3호를 위반 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 52의6. 제258조의5제4호를 위반

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3. ~ 64.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3. (생 략) <u><신 설></u>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 도록 강요한 자

52의7. 제263조의5제1호를 위반 하여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 당 채권을 평가한 자

 52의8.
 제263조의5제2호를 위반

 하여 채권평가에 영향을 미치

 는 정보를 교환한 자

52의9. 제263조의5제3호를 위반 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

52의10. 제263조의5제4호를 위 반하여 채권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 요한 자

53. ~ 64.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_\_\_\_\_

1. ~ 43. (현행과 같음)

43의2. 제254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u>&lt;신 설&gt;</u>	43의3. 제254조의4제1항을 위반
	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
	<u>한 자</u>
<u>&lt;신 설&gt;</u>	<u>43의4. 제254조의4제2항을 위반</u>
	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
	<u>하게 한 자</u>
<u>&lt;신 설&gt;</u>	43의5. 제258조의3제1항을 위반
	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
	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u>&lt;신 설&gt;</u>	43의6. 제258조의4제1항을 위반
	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
	<u>한 자</u>
<u>&lt;신 설&gt;</u>	43의7. 제258조의4제2항을 위반
	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
	<u>하게 한 자</u>
<u>&lt;신 설&gt;</u>	43의8. 제263조의3제1항을 위반
	하여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u> &lt;신 설&gt;</u>	<u>정하지 아니한 자</u> 43의9. 제263조의4제1항을 위반
<u>&lt;신 설&gt;</u>	
<u>&lt;신 설&gt;</u>	 43의9. 제263조의4제1항을 위반

44. ~ 49. (생략)

-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 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 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8의2. (생 략)
- 19. 제418조(<u>제335조의14</u>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 21. (생략)

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
<u>하게 한 자</u>
44. ~ 49. (현행과 같음)
② <u>제255조, 제260</u>
조, 제265조, 제289조
3
,
1. ~ 18의2. (현행과 같음)
19 <u>제255조, 제260조,</u>
제265조, 제335조의14
20. • 21. (현행과 같음)